

「목돈을 불리는 통장」 특약

제 1 조 적용범위

“목돈을 불리는 통장(이하 “이 통장” 이라 함)”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『예금거래 기본약관』 및 개별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한다.

제 2 조 가입대상

이 통장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한다.

제 3 조 거래가능 예금

이 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은행이 별도로 정한다.

제 4 조 모계좌의 지정, 자계좌(개별계좌)의 해지원리금 자동이체 등

- ① 이 통장의 최초개설시 모계좌를 지정하여 자 계좌(개별계좌)의 모계좌(이체지정계좌)로 사용한다.
- ② 이 통장 자계좌의 만기도래시, 별도의 통지가 없는 한 은행이 만기해지 원리금을 제1항에서 정한 모계좌에 별도의 해지청구서 없이 은행의 계좌이체처리 절차에 따라 대체로 입금 처리한다.
단, 자계좌의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이체처리 한다.
- ③ 중도해지 요청시에도 은행은 해지원리금을 모계좌로 이체처리 하도록 한다.
- ④ 자 계좌의 해지원리금 자동이체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, 자계좌의 일반전환을 본인이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.

제5조 개별예금의 재약정 및 신규

- ① 은행이 별도로 정한 예금의 경우에는 만기도래시 거래처의 별도 예금거래계약 신청 없이 동일계정 과목 및 당초 계약기간으로 모계좌에서 대체로 인출하여 재약정 할 수 있기로 한다.
- ② 제1항의 경우 거래처는 최초 예금개설 신청시 해당예금을 지정하여 은행과 별도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.
- ③ 이 통장에 의한 자계좌의 신규는 모계좌(이체지정계좌)의 잔액범위 내에서 거래처의 전화 또는 구두 요청에 의해 처리한다.
- ④ 제1항과 제3항에 의한 자계좌의 재약정 또는 신규시에는 별도의 청구서 및 거래신청서 없이 은행이 모계좌에서 인출하여 처리하기로 한다.
단, 제3항에 의한 신규거래 중 창구에서의 구두요청인 경우에는 신규거래 전표에 본인이 인감날인 하여, 모계좌 인출에 대한 청구서 및 거래신청서를 갈음한다.
- ⑤ 전화 또는 PC 기타 전자금융에 의한 거래인 경우에는 해당거래 약정에 따른다.

<부칙>

이 특약은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